

[별표 3]

### 보호지역 설정기준

제한지역	제한구역	통제구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각급기관 관할 전지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보일러실</li> <li>· 변전실</li> <li>· 발전실</li> <li>· 문서고</li> <li>· 전산실</li> <li>· 대기오염 자동측정소</li> <li>· 물탱크실</li> <li>· 비상안전담당관실</li> <li>· 비화기 설치장소</li> <li>· 실험실</li> <li>· 기기분석실</li> <li>· 기타 당해 관서의 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을지연습 훈련장</li> <li>· 무기고</li> <li>· 탄약고</li> <li>· 통신실(암호자재 설치장소)</li> <li>· 사이버안전센터, 정보통신실 내 시스템실</li> </ul>

※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함